

의안번호	2209304
의 퇴 인	위성곤 의원
회 답 일	2025. 6. 23.
추 계 번호	25C188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① 군복무크레딧 지원 기간을 12개월에서 실제 의무복무기간으로 확대할 경우 예상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2065년부터 2074년까지 5조 3,796억원(연평균 5,380억원)으로 추계되고, ② 출산크레딧의 지원 기간을 확대하고 지원시점을 변경할 경우 예상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8조 661억원(연평균 1조 6,132억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1): 2065~2074년

(단위: 억원)

	2065	2066	2067	2068	2069	합 계	연평균
군복무크레딧 지원 (안 제18조)	1,063	2,044	3,000	3,964	4,891	53,796	5,380
	2070	2071	2072	2073	2074		
	5,815	6,771	7,775	8,747	9,726		

주: 1. 추계기간은 전망모형 상 개정안에 따른 크레딧 산입기간 확대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2065년부터 2074년까지 10년으로 설정

2. 2025년 불변가격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표 2]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2): 2026~2030년

(단위: 억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출산크레딧 지원(안 제19조)	7,389	14,967	17,118	19,374	21,813	80,661	16,132

주: 개정안에 따른 크레딧 지원은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을 의미함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수행한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A값의 50%를 적용하도록 한 현행법 유지) ※(현행)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수행한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한 경우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A값의 50%를 적용) ※(법률 제20903호, 2026.1.1. 시행) 최대 12개월 산입	의무규정
2	안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자녀를 얻은 경우에는 자녀를 얻은 날에 첫째 자녀 24개월, 둘째 자녀부터 자녀당 18개월(무제한) 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 ※(현행) 둘째 자녀 이상을 가진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한 경우, 둘째 자녀 12개월, 셋째자녀부터 추가 18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최대 50개월) ※(법률 제20903호, 2026.1.1. 시행) 첫째, 둘째자녀 각각 12개월, 셋째자녀부터 자녀당 18개월씩 산입(상한 없음)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	○ 국회예산정책처의 국민연금 재정전망 모형을 활용하여 추계
2	안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비용추계의 대상은 군복무크레딧 및 출산크레딧에 따른 추가 산입 기간을 확대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
 - (군복무크레딧) “개정안 기준 적용 시 총재정소요”에서 “현행 기준 적용 시 총재정소요”를 차감하여 추계
 - (출산크레딧) 원칙적으로 “개정안 기준 적용 시 총재정소요”에서 “현행 기준 적용 시 총재정소요”를 차감하여 추계하여야 하나, 현행 기준 적용 시 재정소요가 2046년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¹⁾되는 반면, 개정안에 따른 총재정소요는 법 시행 연도인 2026년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정안 기준 적용 시 총재정소요를 제시
 - 현행 기준은 2026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0903호의 규정을 적용하며, 재정소요는 국회예산정책처의 국민연금 재정전망 모형²⁾을 활용하여 산출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법률은 2026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가정하되, 추계기간은 재정수반요인별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는 시점부터 설정
 - (군복무크레딧) 개정안 부칙은 법률 시행 이후 병역의무의 수행을 시작하는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형상 개정법률 시행 시점인 2026년 평균 입대 연령(21세)인 가입자가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획득이 가능한 시점(60세)에 도달하는 2065년부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
 - － 추계기간이 장기이고 연금급여가 물가상승률에 연동하여 지급되므로 2025년 기준 불변가격³⁾으로 제시

1) 현행법에 따르면 2026년에 다섯째 이상을 출산한 사람부터 노령연금 수급권을 순차적으로 획득하게 되는데, 2026년 다섯째 이상을 출산한 모(母, 출산 시 평균 연령 37세)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60세)가 되는 첫해는 2049년이며, 평균 3세 연상으로 가정된 배우자(父)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되는 첫해는 2046년이므로 2046년부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

2) 다음의 변수를 반영하여 자체구축한 모형: (인구변수) 2023년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의 중위가정, (거시경제변수)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치(2024년 10월 기준), (제도변수) 2024년 실적치까지의 과거 실적 추세와 각각의 추정에 적합한 수리적 모형 등을 고평하여 산출

3) 불변가격은 GDP디플레이터(2024.10. 기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로 각 연도 발생금액을 나누어 산출

- (출산크레딧) 개정안 부칙은 법률 시행 이후 자녀를 얻은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법률 시행 시점인 2026년부터 추가재정소요 발생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군복무크레딧 지원(안 제18조)

- (군복무크레딧 대상자 수) 국회예산정책처의 국민연금 전망모형에 연도별 국민연금 가입률과 사망률 및 장애발생률, 연령별 조기노령연금 수급률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노령연금 수급권자 수에 군복무크레딧 대상자 비율을 적용하여 대상자 수를 산출
 - 개정안에 따른 군복무크레딧 대상자는 현역병⁴⁾, 전환복무요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이며, 2025년부터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사람부터 개정규정 적용
 - (군 입대 연령) 병무청 제출자료에 따른 2024년 군복무크레딧 대상 병역의 평균 입대 연령인 21세 가정
 - (입대자 비율) 2013년 18세에서 시작하여 2024년 29세에 도달한 사람 중 군복무크레딧 대상이 되는 병역으로 입대한 사람 수(30.5만명⁵⁾)의 2024년 29세 남성 인구(37.2만명) 대비 비율(82.0%)을 산출하여 적용
- (병역의무 수행 기간) 2022~2024년 입대자들의 평균 병역의무 수행 기간이 유지된다고 가정
 - 현행법은 6개월 미만 복무자는 군복무크레딧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6개월 미만 복무자도 최소 1개월 이상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6개월 미만 복무자를 합하여 평균 병역의무 수행 기간을 산출

4) 징집병을 의미함(장기복무로 전환하지 않고 제대한 학군장교 및 학사장교가 군복무크레딧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으나 전체 군복무크레딧 대상자 대비 비율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고려하지 않음)

5) 병무청 제출자료

[표 3] 군복무크레딧 대상자 군복무 기간

(단위: 개월)

연 도	육군 등 ¹⁾	해군 등 ²⁾	공군	사회복무요원	평균 복무기간 ³⁾
2024	18	20	21	21	18.7

주: 1) 육군, 해병대, 상근예비역

2) 해군, 해양경찰

3) 평균 복무기간은 유형별 군 복무기간과 유형별 군복무크레딧 대상자 수(추정치)를 가중평균한 복무기간을 가리킴

자료: 국방부, 병무청, 소방청, 경찰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1인당 평균 연금급여액) 국회예산정책처의 국민연금 재정전망 모형을 활용하여 노령연금액을 산출하되, 현행제도 유지 시 추가 산입기간은 12개월⁶⁾, 개정안 적용 시 추가 산입기간은 18.7개월이 적용됨

○ 국회예산정책처의 국민연금 재정전망 모형은 연령별, 가입기간별 소득지수를 적용하여 연금 수급개시 시점의 연금액을 산출하고, 이후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 추계결과,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2065년부터 2074년까지 5조 3,796억원(연평균 5,380억원)으로 추계됨

[표 4]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65~2074년

(단위: 억원)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안 제18조)	2065	2066	2067	2068	2069	합 계	연평균
	1,063	2,044	3,000	3,964	4,891		
	2070	2071	2072	2073	2074		
	5,815	6,771	7,775	8,747	9,726		
	53,796						5,380

주: 1. 추계기간은 전망모형 상 개정안에 따른 크레딧 산입기간 확대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2065년부터 2074년까지 10년으로 설정

2. 2024년 불변가격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6) 법률 제20903호의 규정을 적용

나. 출산크레딧 지원(안 제19조)

□ 출산 연령 및 출산크레딧 대상자에 관한 가정

- (크레딧 지원 대상자 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⁷⁾의 0세 인구추계 결과를 적용하되 2024년 기준 30~39세 여성 인구 대비 직역연금 가입자 수 비율(8.2%)을 차감하여 활용
 - － 직역연금 가입자와 국민연금 가입자의 출산율이 동일하다고 가정
- (출산 순위)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의 2023년 기준 출산순위별 출생아 수 비중이 유지된다고 가정
 - － 첫째 60.2%, 둘째 32.3%, 셋째 6.2% 등

[표 5] 출산크레딧 대상자 수 추계

(단위: 명)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0세 인구	217,079	227,833	237,996	247,279	255,406
출산크레딧 대상자 수 (출산자 중 직역연금 가입자 제외)	199,279	209,151	218,480	227,002	234,463
첫째	119,890	125,830	131,443	136,569	141,058
둘째	64,438	67,631	70,647	73,403	75,815
셋째	12,433	13,049	13,631	14,163	14,629
넷째	1,983	2,081	2,174	2,259	2,333
다섯째 이상	534	560	585	608	628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3년 공표 통계) 및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국방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출산크레딧 적용을 위한 보험료 지원 단가 및 지원 시점에 관한 가정

- (보험료 지원 단가) 국회예산정책처의 국민연금 재정전망 모형에서 도출된 A값에 보험료율을 적용
 - － 보험료율은 2026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0903호의 규정을 적용

7) 2023년 12월 공표 통계 자료를 사용

[표 6] 출산크레딧 보험료 지원 단가 추계: 2026~2030년

(단위: 천원, %)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국민연금 A값(A)	3,254	3,383	3,516	3,654	3,799
보험료율(B)	9.5	10.0	10.5	11.0	11.5
보험료 지원 단가(A×B)	309	338	369	401	43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월별 출생아 수를 알 수 없으므로, 해당 연도 출생아에 대해서는 12개월분이 그해에 지출되고, 차년도부터 남은 기간에 대한 지원분이 순차적으로 지출되는 것으로 가정
- 추계결과,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을 확대(첫째 24개월, 둘째부터 자녀당 18개월)하고 지원 시점을 변경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8조 661억원(연평균 1조 6,132억원)으로 추계됨

[표 7] 출산크레딧 지원 확대 및 지원 시점 변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6~2030년

(단위: 조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출산크레딧 지원(안 제19조)	7,389	14,967	17,118	19,374	21,813	80,661	16,13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출산크레딧에 대하여 현행 제도보다 확대된 기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지원할 경우 추후 수급자들이 수령할 연금액도 증액되는 결과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본 추계서는 향후 5년간 보험료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만 제시함

V. 작성자

□ 성명

국회의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김우림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우림	02-6788-3738	wrkim@assembly.go.kr